

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여성교육지도자과정운영규정

제정 1994. 8. 9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교육대학원 학칙(이하 "학칙"이라 한다) 제26조에 의하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(이하 "교육대학원"이라 한다)에 설치하는 여성교육지도자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강좌의 명칭은 순천대학교교육대학원여성교육지도자과정(이하 "과정"이라 칭한다.)

제3조(운영) 이 과정은 교육대학원 연구생과정과는 별도의 공개강좌로 운영한다.

제2장 입 학

제4조(입학정원) 이 과정의 입학정원은 40명 내외로 한다.

제5조(입학자격) 이 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 한다.

1. 사회교육기관의 임직원.
2. 사회복지 및 봉사단체의 임직원.
3. 사회지도급 인사의 가족.
4. 기타 사회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.

제6조(지원서류) 이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1. 입학지원서(교육대학원 소정양식)
2. 주민등록등본
3. 기타 교육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서류

제7조(전형방법) 이 과정의 전형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한다.

제3장 등록 · 수강 및 이수

제8조(등록) 이 과정에 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소정의 납입금을 지정된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하며, 일단 납입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수강기간) 이 과정의 수강기간은 1학기로 한다.

제10조(개강) 이 과정은 매년 3월과 9월에 각각 개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1조(교과목) 이 과정의 수강교과목은 개강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대학원장이 정한다.

제12조(이수) ① 이 과정의 수강생은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 출석하여야만 이수할 수 있다.

② 이 과정의 이수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이수증서를 수여한다.

제4장 운 영 위 원 회

제13조(운영위원회) ① 이 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교육대학원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교육대학원장이 된다.

제14조(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수강생의 입학 및 이수에 관한 사항
2. 교과목 설치에 관한 사항

3.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5장 표 창

제15조(표창) 이 과정의 이수자중 교육대학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(1994. 8. 9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